

#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## “파주예은방문요양센터 25년 운영 규정 중”

###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**제12조 (이용계약내용)**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**계약목적** :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알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2. **계약기간** :

(1)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(2)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3. **이용계약서** :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4. **계약의 해제**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(1)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

(2)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(3)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

(4)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

(5)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

5. **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 및 의무**

(1) **권리**

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②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③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중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(2) **의무**

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

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③ 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④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사고발생 시 서비스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할 의무

⑤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
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**제13조 (이용비용 및 수납)**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**월 이용료**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는 [표1]과 같으며,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를 산정하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.

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(2025. 1. 1. 기준)

[표1]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(2025년 기준)

| 등급별<br>월 한도액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본인부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 일반 대상자: 15%<br>의료 대상자: 6%<br>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<br>기초생활수급자: 0% |

[표2]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(2024년 기준)

| 분 류     | 수가     | 본인부담금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|        | 15%    | 9%    | 6%    |
| 30분 이상  | 16,940 | 2,541  | 1,525 | 1,016 |
| 60분 이상  | 24,580 | 3,687  | 2,212 | 1,475 |
| 90분 이상  | 33,120 | 4,968  | 2,981 | 1,987 |
| 120분 이상 | 42,160 | 6,324  | 3,794 | 2,530 |
| 150분 이상 | 49,160 | 7,374  | 4,424 | 2,950 |
| 180분 이상 | 55,350 | 8,303  | 4,982 | 3,321 |
| 210분 이상 | 61,670 | 9,251  | 5,550 | 3,700 |
| 240분 이상 | 68,030 | 10,205 | 6,123 | 4,082 |

[표3]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

| 서비스 제공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(원)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2시 이후 06시 이전                     | [표2]의 소정수가에 30%를 가산 |
|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』에 따른 일요일 |                     |
| 『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』에 따른 유급휴일          | [표2]의 소정수가에 50%를 가산 |
| 『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근로자의 날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② 본인부담금 :

- (1) 일반 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
- 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(3) 의료급여 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, 장기요양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 경감한다.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6%, 9%) 세부기준

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: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(비급여)은 대상자(보호자)가 전부 부담한다.

- (1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(2) 대상자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
- (3)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
- (4) 장보기 비용: 시장 동행시 실제 물품 구입비용
- (5)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④ (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)

- (1) 수납 -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 
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.
- (2)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